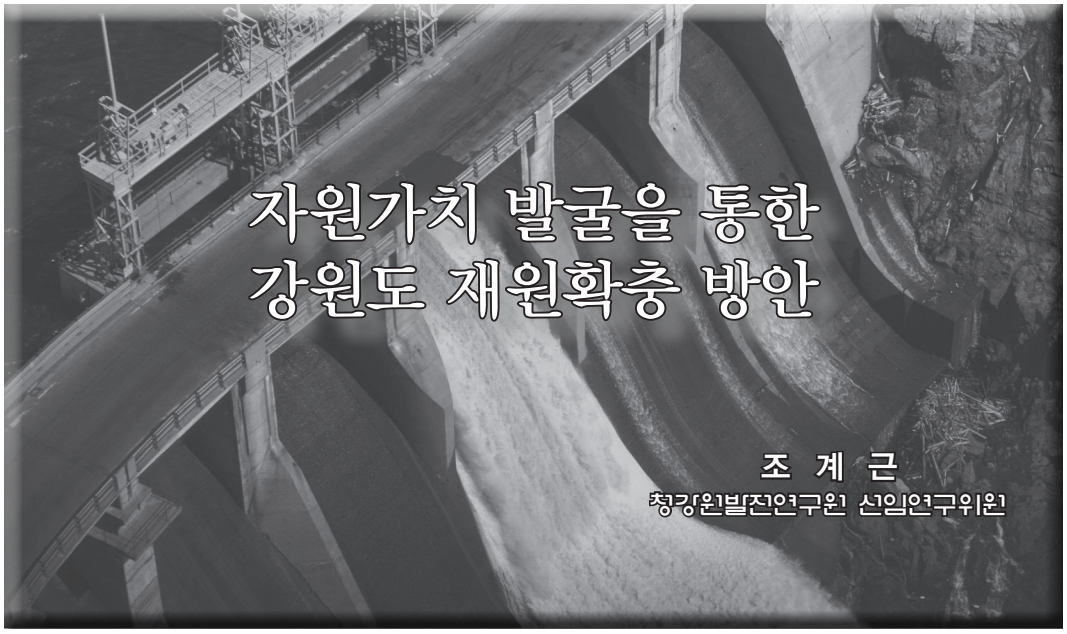

자원가치 발굴을 통한 강원도 재원확충 방안

조 계 근
청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91년부터 지방의회,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제도의 시행으로 형식적으로는 지방분권 제도를 도입한지 15년이 흘렀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정부 국정목표로 정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이 추진되어 재정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일부 미시적인 제도들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화나 재정자주권 확대 등은 추진되지 못했다.

최근들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세화가 지방재정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95년부터 지방분권제도가 도입된지 15년 동안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지방재정

연구들의 주류는 대부분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 이전재원 분야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세출분야의 성질별, 항목별 예산의 합리적 사용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성숙도에 따른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이나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조정이나 근본적인 개혁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국가부채의 문제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의심을 받아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을 예고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문제도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국민총생산 대한 비율이 낮고, 선진국에 비해서 낮아 안전하다는 쪽과 각종 지표들이 벌써 위험을 예고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선 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96년이후 2009년까지 강원도 재정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미래 강원도의 잠재적인 자원가치제고를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강원도 재정현황과 문제점

1. 강원도 재정현황 분석

강원도의 재정분석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강원도의 세출규모(일반회계)와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 〈표 1〉과 같다.

우리나라 지방규모는 지방자치의 실시 이전인 1990년에는 15조 3,000억원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부터 크게 신장하여 1996년 42조 9,000억원, 2009년에는 137조 5,3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증가율도 1990년 기준으로 2000년 377%, 2009년 898%로 증가하였다.

〈표 1〉 지방재정 대 강원도 재정(일반회계)

(단위 : 10억원, %)

년 도	지방재정(A)		지방재정				비중	
	규 모	신장률(%)	강원도(B)	신장률(%)	도본청(C)	신장률(%)	B/(A+B)	C/(A+C)
1990	15,320	100	1,035	100	454	100	6.33	2.88
1993	24,220	158	1,257	121	406	89	4.93	1.65
1994	30,340	198	1,619	156	503	111	5.07	1.63
1995	35,791	234	1,929	186	687	151	5.11	1.88
1996	42,935	280	2,627	254	994	219	5.77	2.26
1997	50,532	330	3,056	195	1,078	237	5.70	2.09
1998	51,520	336	3,110	300	1,088	240	5.69	2.07
1999	54,496	356	3,384	327	1,362	300	5.85	2.44
2000	57,814	377	3,501	338	1,210	273	5.71	2.10
2001	70,100	458	4,288	414	1,618	356	5.76	2.26
2002	80,315	524	6,207	600	3,271	720	7.17	3.91
2003	92,980	607	7,378	713	3,805	838	7.35	3.93
2004	96,764	632	6,269	606	1,956	431	6.08	1.98
2005	101,925	665	5,842	564	2,070	456	5.42	1.99
2006	110,947	724	7,674	741	3,718	819	6.47	3.24
2007	120,286	785	7,535	728	2,553	562	5.89	2.08
2008	136,625	892	7,643	738	2,607	574	5.29	1.91
2009	137,534	898	8,637	834	2,662	586	5.90	2.10

주 : 2008년까지는 결산액, 2009년도 도본청은 당초예산액임
자료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09).

강원도 경우 총재정규모가 1990년 1조 350억원에서 1996년 2조 6,270억원, 2000년 3조 5,010억원, 2009년 8조 6,37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90년 기준으로 1996년 254%, 2009년 834%로 증가하였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1990년 4,540억원에서 1996년 9,940억원, 2009년 2조 6,62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90년 기준으로 1996년 219%, 2009년 586%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 본청의 재정규모가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88%에서 1996년 2.26%로 낮아 졌다가 2000년에는 2.10%로 낮아졌고, 2009년에는 2.1%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그림1〉 참조).

특히 강원도 본청 재정규모의 신장율은 2009년 586%로 우리나라 지방재정규모가 2009년 898% 증가

한 것과 대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1〉 지방재정, 강원도 재정, 도본청 재정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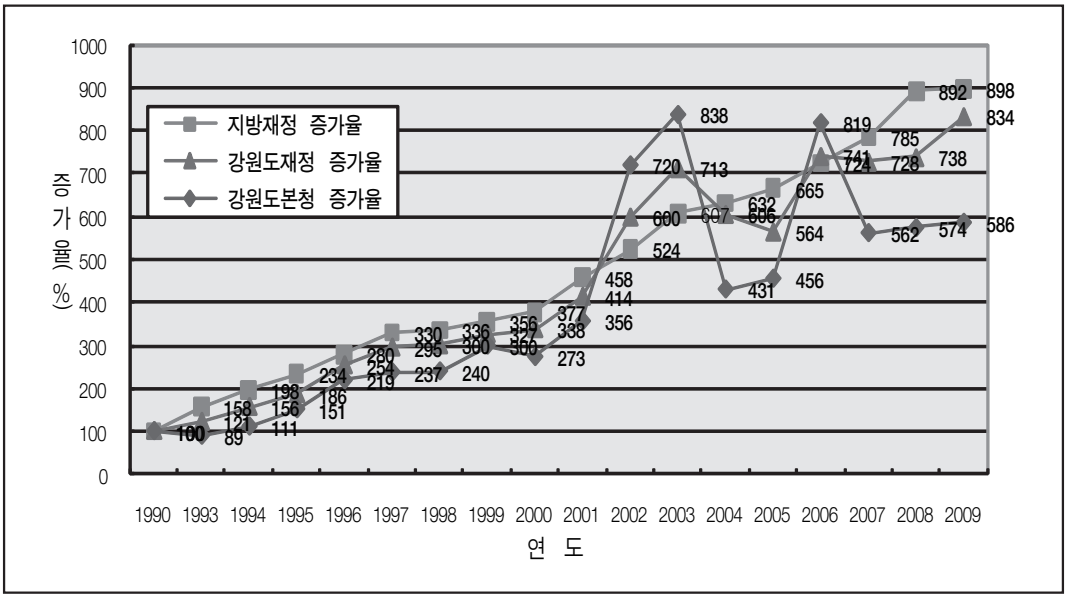

2. 세입구조분석

(1)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 본청의 경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존수입의 비중이 1990년 72.2%, 2000년 69.3%, 2009년 73.4%로,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오히려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2002년과 2006년에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02년의 경우 태풍과 홍수피해로 인한 각종 안전고사의 실시로 인해 정부보조금이 증가했고, 2006년에는 지방양여금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통폐합되었기 때문이다.

〈표 2〉 강원도 본청 세입구조(일반회계)

(단위 : 10억원, %)

년 도	자체수입(A)			의존수입(B)				지방채 (C)	총계(D)	의존도 B/(A+ B+C)
	지방세	세외수입	소 계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고 보조금	소 계			
1990	75	67	142	169	-	199	368	-	510	72.2
1998	179	167	346	203	106	469	778	76	1,200	64.8
1999	195	157	352	185	92	734	1,011	94	1,457	69.4
2000	190	153	343	213	138	509	860	38	1,241	69.3
2001	309	95	404	304	162	851	1,317	21	1,742	75.6
2002	361	191	552	373	133	2,544	3,050	4.6	3,607	84.6
2003	382	433	815	634	151	1,236	2,021	113	2,949	68.5
2004	417	239	656	364	156	851	1,371	56	2,083	65.8
2005	477	240	501	452	-	1,025	1,477	84	2,278	64.8
2006	595	328	923	536	-	2,569	3,105	30	4,058	76.5
2007	567	480	1,047	517	-	1,126	1,643	40	2,730	60.2
2008	505	258	763	614	-	1,370	1,984	30	2,777	71.4
2009	583	73	656	552	-	1,402	1,954	50	2,660	73.4

주 : 2008년까지는 결산액, 2009년도는 당초예산액임.
자료 : 강원통계연보(1991~2009)와 재정고 지방세입예산규모를 참고.

〈표 3〉 도별 지방세 비중과 증가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강 원	비중	2.4	2.4	2.3	2.3	2.5	2.5	2.6	2.5	2.4
	신장율	5.9	29.2	10.2	7.3	11.8	4.4	18.7	4.0	-2.1
경 기	비중	22.2	24.1	25.4	24.9	25.1	24.9	26.0	26.3	25.8
	신장율	16.3	40.8	24.6	2.9	4.0	4.5	19.5	6.9	2.3
충 북	비중	2.3	2.3	2.1	2.2	2.4	2.3	2.5	2.5	2.4
	신장율	4.7	27.1	11.2	9.2	11.6	1.3	25.7	3.5	2.4
충 남	비중	3.1	3.0	2.8	3.3	4.1	3.9	3.8	3.8	3.8
	신장율	9.9	26.5	10.1	21.9	31.5	0.2	9.3	6.3	5.5
전 북	비중	2.6	2.5	2.2	2.2	2.3	2.3	2.2	2.3	2.5
	신장율	4.2	23.9	6.2	6.3	7.4	4.8	9.6	10.9	11.0
전 남	비중	2.7	2.6	2.4	2.3	2.5	2.6	2.6	2.6	2.7
	신장율	7.8	25.0	9.0	0.9	9.3	9.0	15.1	6.3	10.8
경 북	비중	4.6	4.3	3.8	3.8	4.1	4.4	4.4	4.3	4.2
	신장율	10.4	21.4	3.9	5.4	11.3	12.7	13.6	3.8	2.5
경 남	비중	5.1	5.1	5.2	5.2	5.4	5.7	5.6	5.9	6.4
	신장율	9.1	28.4	20.1	4.8	7.5	11.9	12.4	10.7	14.2
제 주	비중	1.1	1.2	1.2	1.2	1.2	1.1	1.1	1.0	0.1
	신장율	11.3	39.4	14.8	3.0	4.7	1.1	8.1	3.1	-0.5

주 : 각 년도 지방세정연감(2001-2009)에서 발췌함.

⑵ 지방세 비중과 신장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의 규모, 비중, 증가율이라는 면에서 시도 중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세입구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3~2.5%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이나 전남, 충북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지방세 증가율면에 있어서는 전남이나 충북보다는 우세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세입구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26%인데 비해, 강원도는 2.3%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여 지방세신장율이 2.1%나 감소했다.

⑶ 지방세목별 규모와 비중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 본청의 지방세 총 규모는 1991년 93,300백만원, 1995년 169,502백만원, 2009년 501,40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부터 신설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와 등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강원도 본청 세입구조(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 세								
	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
1991	93,300	45,274	45,443	1,503	-	-	-	-	1,079
1995	169,502	68,723	86,582	3,913	-	2,290	4,772	-	3,219
2000	189,841	72,172	93,698	5,164	-	4,477	9,009	-	5,318
2001	309,129	80,398	114,076	1,593	-	4,372	8,907	92,691	7,089
2002	361,448	112,573	138,769	1,689	-	4,613	9,325	88,552	5,924
2003	382,256	124,228	142,568	1,765	-	5,253	10,242	92,307	5,890
2004	417,301	144,385	147,411	1,852	-	5,173	11,065	101,568	5,845
2005	477,369	184,643	169,954	1,916	-	4,765	10,370	98,605	7,112
2006	594,680	248,385	204,584	1,985	-	6,072	11,994	114,532	7,125
2007	556,840	233,680	184,060	1,990	-	6,000	12,593	117,786	10,728
2008	505,374	189,837	169,012	1,922	-	6,130	14,096	121,193	3,180
2009	501,404	176,594	163,957	1,975	-	6,228	14,215	123,044	15,591

주 : 각 년도 지방세정연감(1992-2009)에서 발췌함.

세입구조 측면에서 강원도 지방세 신장율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강원도 본청 지방세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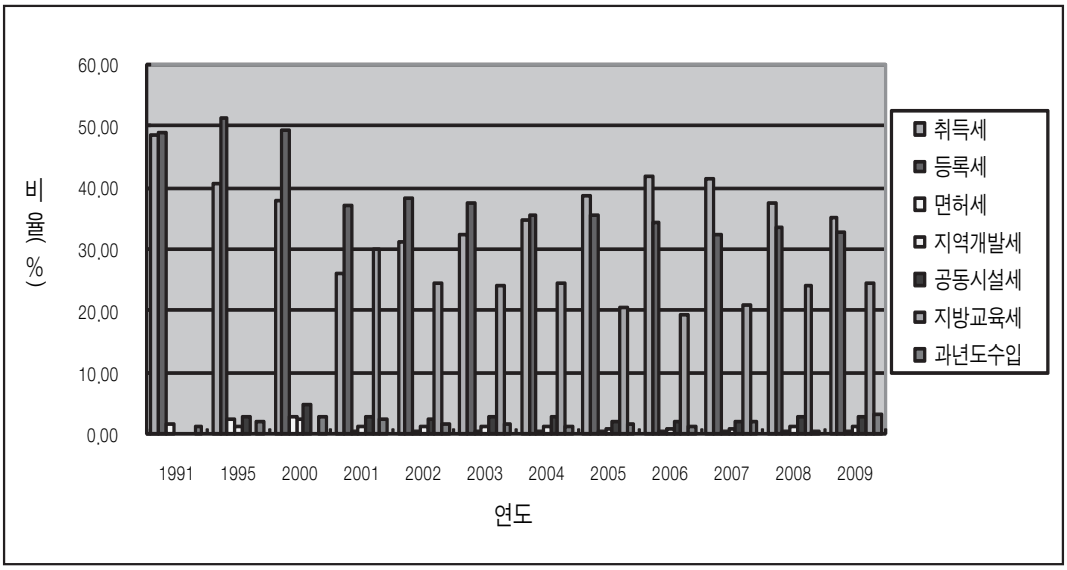

〈표 5〉 강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단위 : %)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도 본청		시		군		도 본청		시		군	
	전국 도평균	강원도 본청	전국 시평균	강원도 시평균	전국 군평균	강원도 군평균	전국 도평균	강원도 본청	전국 시평균	강원도 시평균	전국 군평균	강원도 군평균
2001	35.6	26.4	43.4	30.5	18.1	16.5	49.6	47.4	68.7	62.7	56.5	60.8
2002	34.6	22.1	40.2	27.3	17.4	16.7	49.1	44.8	68.0	62.0	58.9	63.8
2003	39.4	21.7	38.0	26.6	16.3	16.1	52.9	44.0	66.7	62.9	58.9	63.6
2004	41.3	24.2	38.8	26.7	16.6	17.3	54.2	46.0	68.4	63.2	59.5	64.5
2005	36.6	22.4	40.6	26.7	16.5	17.9	53.3	46.8	74.5	71.4	66.9	71.6
2006	36.1	21.8	39.4	25.8	16.1	15.1	50.0	44.3	74.6	73.5	65.9	67.5
2007	34.9	24.2	39.5	26.7	16.6	14.9	51.0	46.6	72.1	72.7	65.3	68.2
2008	34.8	23.3	40.7	26.6	17.2	15.2	50.7	45.2	72.0	71.4	64.8	69.3
2009	33.3	21.4	40.7	25.4	17.8	15.3	49.5	43.1	71.5	68.8	64.6	68.8

주 : 각 년도의 %는 예산자료로 작성된 것임.
자료 : http://lofin.mopas.go.kr(지방재정통계).

(4)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1]가 2009년 30%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주도[2]는 전국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보다 다소 높지만 43.1%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양지표 모두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3. 세출구조분석

(1) 회계별 세출구조

〈표 6〉 강원도 본청 회계별 세출 규모

(단위 : 십억원)

년 도	강원도 총재정(A)	강원도본청(B)					B/(A+B)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90	1,035	454	89.4	54	10.6	508	32.9
1993	1,257	406	71.5	162	28.5	568	31.1
1994	1,619	503	82.6	106	17.4	609	27.3
1995	1,929	687	85.4	117	14.6	804	29.4
1996	2,627	994	86.5	155	13.5	1,149	30.5
1997	3,056	1,078	88.7	137	11.3	1,215	28.4
1998	3,110	1,088	88.1	147	11.9	1,235	28.4
1999	3,384	1,362	87.2	200	12.8	1,562	31.5
2000	3,501	1,210	87.7	169	12.3	1,379	28.2
2001	4,288	1,618	90.1	177	9.9	1,795	29.5
2002	6,207	3,271	93.0	248	7.0	3,519	36.1
2003	7,378	2,805	89.9	316	10.1	3,121	29.7
2004	6,269	1,956	87.1	289	12.9	2,245	26.3
2005	5,842	2,070	86.7	317	13.3	2,387	29.0
2006	7,674	3,718	93.0	278	7.0	3,996	34.2
2007	7,535	2,553	86.0	414	14.0	2,967	28.2
2008	7,643	2,607	86.4	413	13.6	3,020	28.3
2009	8,637	2,662	86.7	407	13.3	3,069	26.2

주 : 2008년까지는 결산액, 2009년도 도본청은 당초예산액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합임.
자료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09)

1) 산출방식=지방세+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X100
2) 산출방식=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지방자치단체예산규모X100

강원도 본청은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인 1990년 재정규모가 5,080억원으로 일반회계 89.4%인 4,500억원과 특별회계 10.6%인 540억원으로 구성되었었다[3].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가 1996년 86.5% 대 13.5%, 2000년 87.7% 대 12.3%, 2009년에는 86.7% 대 13.3%로 특별회계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 참조). 강원도 본청의 회계별 세출구조에서 도본청의 총예산이 강원도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는 26.2%에 이르러 2000년대 이후 점차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4]

⑵ 기능별 세출구조

예산의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by function)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일반 주민들에게 유용한 예산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림 3〉 강원도 본청 세출 기능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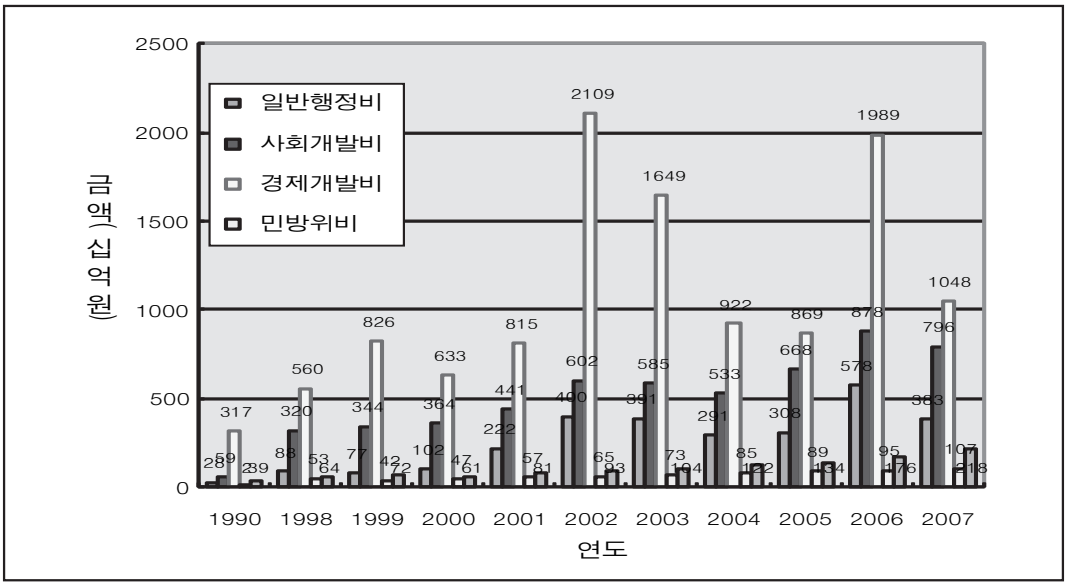

3) 지방자치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총재정은 강원도 본청과 18개시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합을 의미함.

강원도 본청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1990년 280억원인 6.3%, 2000년 1,020억원인 8.5%, 2007년 3,800억원인 15%로, 사회개발비는 1990년 590억원인 13.3%, 2000년 3,600억원인 30.2%, 2007년 7,900억원인 31.2%로서 기능별 세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경제개발비는 1990년 3,100억원인 71.2%, 2000년 6,300억원인 52.4%, 2007년 1조 400억원인 41.1%로 전체 세출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같은 강원도 본청의 기능별 세출구조의 구성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민의 정부 이후 강원도 본청의 세출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의 수요가 1990년 13.3%에서 2007년 31.2%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복지 지출사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5)]

⑶ 품목 · 성질별 세출구조

품목 · 성질별 세출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지출대상별로 세출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표 7〉 강원도 본청 품목성질별 세출구성 비율(%)

년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기타	계
1985	5.05	4.96	14.83	65.68	-	7.97	1.14	0.37	100
1990	2.93	3.00	12.49	73.77	1.08	3.23	2.80	0.70	100
1995	6.52	5.33	18.10	65.44	2.32	0.38	1.80	0.11	100
2000	5.61	5.17	25.86	58.19	1.48	0.24	3.51	0.04	100
2001	4.47	4.33	19.31	63.29	0.35	0.68	7.53	0.04	100
2002	2.51	2.28	11.26	79.66	0.18	0.20	3.87	0.04	100
2003	3.26	3.13	14.30	73.98	0.20	0.26	4.81	0.05	100
2004	5.28	4.92	23.23	57.21	0.24	0.93	8.11	0.10	100
2005	6.80	4.68	24.73	55.81	0.49	0.83	6.50	0.16	100
2006	4.05	1.89	17.48	70.73	0.61	0.64	4.51	0.09	100
2007	6.39	3.39	28.15	51.61	0.42	1.98	7.22	0.86	100
2008	6.08	2.96	29.94	52.48	0.25	1.29	6.51	0.49	100
2009	6.34	3.07	33.07	48.96	0.29	0.87	6.39	1.01	100

주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1991-2009)에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비율을 계산하였음.

5) 2008년부터는 기능별 세출이 일반행정비 등 5개 항목에서 일반공공행정비 등 14개 항목으로 바뀌어서 그래프나 표에 숫자를 포함시키지 못했음.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출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 73.8%, 1995년 65.4%, 2009년 48.9% 등이다.

한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93%, 1995년 6.52%, 2009년 6.34%로 나타났으며, 물건비의 비중은 1990년 3.0%, 1995년 5.33%, 2009년 3.07%이었다. 이전경비의 비중은 1990년 12.49%, 1995년 18.1%, 2009년 33.07%로 나타났고, 자본지출은 1990년 73.77%에서 2009년 48.96%로 계속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융자와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본청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이전경비의 급증과 내부거래의 증가는 아직도 예산배분의 비효율 내지는 정책적인 경비지원 등의 예산관행들이 과거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Ⅲ. 강원도의 미래자원의 합리적 가치 발굴 방안

1.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1)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지만 '70년대 경제 개발 이후 '99년까지 물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용수사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세, 환경부의 수질개선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소극적인 정책만 추진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규제면적이 13,689.97㎢으로 개발가능 면적인 3,173.40㎢의 약 4.3배에 달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구 및 소득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1999년 "한강특별법"을 제정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의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20원씩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의 수자원 보전과 주민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강원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 1,400백만톤 중 65.7%를 공급하고 있고 팔

당호 수질보전에 32.5%의 기여하고 있지만, 한강수계기금의 17%만 배분받아 당초 기대치에 못미치며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⑵ 물이용부담금의 항목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물이용부담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면적과 인구의 가중치를 50%씩 적용하여 규제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나 충북은 배분액이 적게 책정되었다. 주민지원사업비의 본래 목적이 규제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적 성격이므로 당초 목적인 수질개선, 주민 불이익 보전, 지역간 형평성 분배 측면에서도 인구가중치 30, 면적 가중치 70 등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비의 경우, 유역면적, 인구수, 산림면적, 규제면적, 재정자립도 등 5가지 변수를 5~45%씩 결합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5개의 변수들을 거의 균등한 비율로 적용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시설 설치비는 90%, 운영비는 91.2%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지 등의 매수사업비는 용도별,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수변인접정도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올려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⑶ 물이용부담금 배분방법 개선과 효과

시도별 배분총액 3,136억원중 지역경제지표인 인구증가율로 50%를 나눌 경우 2008년에 강원도에 208억원, 충북에 179억원, 경기도에 396억원이 배분되고, 지역내 총생산으로 나눌 경우 강원도 183억원, 충북에 205억원, 경기도에 396억원이 배분되었다.

한편 수질오염기여도를 이용할 경우, 경기도는 -17.7%로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악화기여도가 가장 높지만 기금은 55.4%로 가장 많이 배분됐고, 충청북도는 수질악화에 -5.9% 기여하고 기금은 9.7%를 사용했으며, 강원도는 32.5% 수질개선에 기여하지만, 기금은 20.4%만 배분되어 당초 물이용부

담금의 목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3개 시도의 수질기여도 절대값의 합은 56.1%로 2005년도 한강수계 기금 중 시도별 배분액인 1,568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경기도가 17.7%인 495억원, 충북은 5.9%인 165억원, 강원도는 32.5%인 909억원이 배분된다.

결국 현재 약 700억원 정도 물이용부담금을 배분받는 강원도는 현 제도상에서 수질기여도 등의 지표 가중치를 높이면 1,500억원 정도를 배분 받게 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부담비율을 톤당 200원정도로 인상하면 매년 약 2,000~3,000억원 정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중장기 정책 대안

중장기 대책을 살펴보면 수변구역내에 법령이 정한 시설 이외의 연수시설, 병원 등의 신설에 따른 각종 오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변구역을 세분화하여 수변 30m나 50m 이내는 제척지역으로 포함시켜 보전한다. 토지 이용 고도화에 따라 고랭지의 흙, 축산농가의 축분 폐수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금배분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지표와 수질기여도를 배분지표로 사용할 경우 가중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리가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역의 환경 용량이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설 및 운영되어 비용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된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는 통합 운영체제로 변경해야 한다.

2. 다목적댐 주변지역 피해 · 편익추정을 통한 합리적 보상방안

(1) 댐에 의한 편익

첫째, 용수공급을 통해 얻는 댐의 용수공급편익은 사용 목적과 용도, 수질, 수원(水源)거리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익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댐별 용수판매량과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을 적용한 결과,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255억원, 안동댐은 164억원, 충주댐은 866

억원 정도 용수공급 편익이 발생한다.

둘째, 수력발전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이나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비해 안전하고 청정한 발전수단이다. 또한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에서는 발전량의 조절이 어렵지만, 수력발전은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첨두시간대에 집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525억원, 안동댐은 105억원, 충주댐은 465억원 정도 발전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소양댐 하류의 수자원은 다시 의암, 청평, 팔당의 자연유하식 발전소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셋째, 홍수조절편익은 하천의 범람에 의해 유실된 재산상의 물리적 피해감소, 홍수조절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증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지가상승) 등의 직접적인 편익과, 홍수시 생산의 중단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의 해소, 임금 및 기타 수입의 감소 해소, 물에 젖어 못 쓰게 되는 재고품 피해의 경감 등의 간접적인 편익 등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180억원, 안동댐은 40억원, 충주댐은 222억원 정도 홍수조절 편익이 발생한다.

결국 총편익은 위의 편익 이외에도 댐 건설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 및 레크레이션 제공효과, 주운의 관광효과 등이 있겠으나, 일시적인 효과 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제외했다. 외국의 경우 댐 건설후 댐 주변에 생태문화공간(자연학습장, 체험교실, 문화유적 전시공간 등)을 만들거나 각종 생태계 보호공간 및 이동통로의 설치, 관찰학습시설까지도 만들어 탐방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나, 우리나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은 이런 시설이 전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려 해도 수자원공사 등이 비협조적이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960억원, 안동댐은 310억원, 충주댐은 1,550억원 정도의 총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홍수조절 편익과 용수공급편익의 일부만 댐주변 지역주민에게 편익으로 작용할 뿐, 나머지 홍수조절편익과 용수공급편익 및 수력발전 편익 대부분은 국가기관의 편익으로 돌아가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편익은 미미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피해로 작용한다.

〈표〉 댐별 편익액 총괄표(2005년, 2007년)

구 분		발 전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총편익 (백만원)
		발전량 (GWh)	수입금 (백만원)	용수량 (백만㎥)	수입금 (백만원)	홍수조절 (백만㎥)	편익 (백만원)	
소양강댐	2005년	482	37,215	535	25,638	500	18,000	80,853
	2007년	549	52,677	532	25,480	500	18,000	96,157
안동댐	2005년	158	18,113	358	17,134	110	4,000	39,247
	2007년	106	10,591	348	16,360	110	4,000	30,951
충주댐	2005년	1,129	64,262	1,608	56,478	616	22,200	142,940
	2007년	880	46,445	1,807	86,616	616	22,200	155,261

주 : 발전 및 생공용수의 판매량 및 수익금 자료는 댐관리처 내부자료이며, 홍수조절에 대한 편익금액은 추정치임.

(2) 댐에 의한 피해

수몰지역의 피해를 추산해 보면, 첫째, 수몰지역은 인구감소와 토지감소로 지방의 주민세와 소득세, 농지세 등이 감소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25~100억원, 안동댐은 30~88억원, 충주댐은 39~82억원 정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둘째, 수몰로 토지감소로 농작물 경작 감소(쌀농사, 밭농사, 과수농사)로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400억원, 안동댐은 985억원, 충주댐은 817억원정도 농업소득이 축소된다. 셋째, 임산물 생산액(용재, 버섯, 산나물, 연료 등)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5억원, 안동댐은 7억원, 충주댐은 9억원 정도 임업소득이 감소한다. 넷째, 강변 주변 시군이 골재채취권 상실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9억원, 안동댐은 33억원, 충주댐은 56억원 정도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이 감소한다.

다음으로 댐 주변지역의 피해를 추산해 보면, 첫째,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이 감소한다. 즉 안개대량발생 및 햇빛 산란 등으로 인해 생육불량, 출하지연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 감소(곡류,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류, 특용작물 등)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130~215억원, 안동댐은 268~500억원, 충주댐은 460~828억원 정도 농업소득이 감소한다. 둘째, 기상변화로 주민건강의 피해로는 안개발생으로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의 발생으로 주민치료비가 증가한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75~150억원, 안동댐은 50~100억원, 충주댐은 115~230억원 정도 진료비가 증가한다. 셋째, 교통시간 및 거리추가로 인해 교통비가 증가한다. 즉 도로의 거리와 교통시간의 증가로 인해, 2007

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560억원, 충주댐은 330억원 정도 주민들의 교통비가 추가된다. 넷째, 선박이나 시내버스의 운행비가 증가한다. 즉 댐건설로 오지마을의 교통수단인 버스와 선박의 운행으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5억원, 충주댐은 20억원 정도 교통비용이 증가한다. 다섯째, 냉수 및 탁수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즉 댐의 건설로 인해 댐의 저장수 이용시 온수지를 거쳐야하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과 장마와 폭우 발생시 탁수 유입으로 인한 정수장 약품비 등의 비용이 수반된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117억원, 충주댐은 2억원 정도 소요되어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표〉 댐별 연간 피해액 총괄표

피해구분			피해액(백만원/년)		
			소양강댐	안동댐	충주댐
수몰 지역 피해	수몰로 인한 피해	지방세 감소	2,491~10,246	2,935~8,786	3,855~8,177
		농업소득 감소	40,054	98,557	81,661
		임업소득 감소	551	715	942
		골재채취권 상실	900	3,273	5,597
	소 계		43,995~51,751	105,480~111,331	92,055~96,377
주변 지역 피해	기상 변화로 인한 피해	농업소득 감소	13,056~21,552	26,783~50,126	46,071~82,715
		주민건강 피해	7,473~14,946	5,108~10,215	11,523~23,047
	교통 불편 피해	교통시간 및 거리추가	56,637	-	33,137
		선박 및 시내버스 운행비	501	-	2,055
	기타 피해	냉수피해	4,573	-	255
		탁수장기 발생	7,148	-	2
	소 계		89,388~105,357	31,891~60,341	93,043~141,211
총 계			133,383~157,108	137,371~171,672	185,098~237,588

⑶ 총 피해

결국 댐 건설은 수몰지역의 피해인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감소, 임업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로 인한 피해 등을 합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440~518억원, 안동댐은 약1,055~1,113억원, 충주댐은 약 920~965억원 정도 피해액이 발생한다. 주변지역에는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주민건강 피해와 함께 교통 불편으로 인한 교통시간 및 거리추가에 따른 피해와 선박 및 버스운행이 등이 발생하며, 냉수로 인한 피해와 탁수 장기발생 처리비용 등으로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894~1,054억원, 안동댐은 319~600억원, 충주댐은 930~1,410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다. 이 들을 모두 합한 총 피해액은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이 약 1,334~1,570억원, 안동댐은 1,374~1,717억원, 충주댐은 1,850~2,375억원 정도의 총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2007년 기준 다목적댐들의 총 편익은 소양댐이 960억원, 안동댐이 310억원, 충주댐이 1,550억원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총 피해는 소양댐이 1,500억원 내외, 안동댐이 1,500억원 내외, 충주댐이 2,100억원 내외를 나타낸다. 결국 2007년에 다목적댐들은 소양댐이 약 600억원, 안동댐이 약 1,200억원, 충주댐이 약 550억원 정도로 지역에 순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다목적댐들(소양,의암, 청평, 춘천, 화천, 광동, 횡성)의 순피해는 규모와 수몰면적 등을 감안하면, 약 1,500~2,000억원+α(댐관련기관편익 등)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나 지역개발세 배분 등의 피해보상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탄소세의 합리적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

⑴ 필요성

인류는 20세기말 들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OECD와 동구권 등 38개국은 1997년 기후변화의 근본요소인 온실가스를 2012년말까지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경제대국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선진국들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약 20~40%

감축할 것을 약속했으며, 우리나라도 약 30% 감축한다는 정책을 2009년말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탄소 5.94억톤을 배출하고 탄소배출 증가율은 세계 1위국이므로 2013년 이후에는 탄소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들처럼 탄소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⑵ 도입방법

많은 정보와 효율적 감시능력이 필요한 직접탄소세보다 효율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오염억제 기능이 높은 간접탄소세가 합당하며, 오염원 중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므로 징세권과 세수보유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국세가 합당하며, 과세대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용변수인 연료사용량이 적합하다.

연료사용량을 탄소배출량 대신 사용하므로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이고, 세율은 탄소배출 톤당 일정한 금액을 과세하는 단순정액세율이 합당하며, 세목은 세입을 반드시 탄소배출량 억제에 사용하는 목적세가 적합하다.

⑶ 파급효과와 세수배분 방안

탄소세를 탄소배출 톤당 $10(13,000원)을 부과하면, 산업별 가격상승율은 석유 및 석탄업의 제품이 2.99% 등 중공업이 높고, 금융 및 보험업이 0.0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0.07% 등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율이 낮다. 강원도 산업의 가격상승율은 석유 및 석탄업 제품이 2.35% 등 중공업이 높고, 금융 및 보험업이 0.05% 등 서비스업이 낮았다. 강원도 서비스업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는데, 이는 탄소세 신설로 인해 서비스업 비율이 70%가 넘는 강원경제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상승률은 선박은 약 0.4%~0.8%, 승용차는 약 0.3%~0.6%이고, 강원도 주요 수출품목 중 의료용전자기기는 약 0.1%~0.2%로 상승한다. 결국 탄소세 부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과 강원도의 시멘트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크게 하락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탄소세 징수액 중 50%정도는 탄소배출을 저감시설이나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고, 50%는 탄소흡수능력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탄소흡수원인 산림면적이 75%, 임목축적량이 25% 기여한다고 가정했다. 2005년 산업 활동의 탄소배출량은 155,434천 CO2톤으로 여기에 톤당 $10(13,0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총징수액은 약 2조 206억 4,200만원인데, 여기에 6%를 차감하면 1조 8,994억 500만원이 된다. 탄소세 중 강원도에 11.64%인 약 1,212억 500만원이 배분되고, 서울특별시에는 0.13%인 약 24억 6,900만원이 배분된다. 탄소세를 처음 도입하는데 일본 사례처럼 톤당 $10부과는 과다하며 톤당 3~5달러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톤당 부과기준 등이 변함에 따라 강원도에 배분되는 탄소세는 매년 약 1,200~2,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 합리적 정책제언

탄소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과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정책추이를 주시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세법을 만들고, 징수액의 배분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선박, 합금철, 시멘트 품목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해 산업계의 조세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역진적인 성향을 보여주므로 탄소세 신설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제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 정책은 첫째, 탄소세와 기업의 법인세 경감조치 등을 연계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며, 둘째, 국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안정적인 환경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을 통합하거나 사용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995년부터 지방분권제도가 도입된지 15년 동안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국가부채의 문제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의심을 받아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문제도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국민총생산 대한 비율은 낮지만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6년 이후 2009년까지 강원도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강원도의 잠재적인 자원가치제고를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강원도 본청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보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의존수입의 비중이 1990년 72.2%, 2000년 69.3%, 2009년 73.4%로,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자원가치발굴을 통한 강원도 재원확대 방안은 첫째, 현재 연간 강원도에서 배분받는 약 700억원 정도 물이용부담금을 현 제도상에서 수질기여도 등의 가중치를 높이면, 1,500억원 정도 증액 배분받게 된다. 또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부담비율을 200원 정도로 인상하면 매년 약 2,000~3,000억원 정도 배분액이 증가된다. 둘째, 2007년 기준으로 다목적댐들의 피해와 편익을 가감한 결과, 소양댐이 약 550억원, 안동댐이 약 2,100억원, 충주댐이 약 450억원 정도로 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도 다목적댐들(소양,의암, 청평, 춘천, 화천, 광동, 횡성)의 순피해는 약 1,500~2,000억원+α(댐관련기관편익 등)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나 지역개발세 배분 등의 피해보상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톤당 $10(13,0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총 징수액은 약 2조 206억 4,200만원인데, 여기에 6%를 차감하면 1조 8,994억 500만원이 된다. 이 중 강원도에 11.64%인 약 1,212억 500만원이 배분되고, 서울특별시에는 0.13%인 약 24억 6,900만원이 배분된다. 만약 일본 사례처럼 톤당 3~5달러를 부과하게 되면 강원도에 배분되는 탄소세는 매년 약 1,200~2,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결론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약 800~1,200억원, 댐피해보상비 1,500~2,000억원+α, 탄소세 1,200~2,000억원을 강원도가 징수하거나 배분받게 되면 매년 3,500~5,200억원의 강원도 자주재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2010년 강원도 본청의 도세 징수예산액 6,305억원의 약 55~82%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강원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개발세의 세원확대와 세율인상, 관광세나 입도세의 신설, 부가가치세의 지방세화 등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렸지만, 일부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 부가가치세 5%의 지방소비세화 등 미진한 성과를 이루었다.

강원도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시도 및 관련 부처와 협상력을 강화를 위해 강원도 내 정책관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인 강원거버넌스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교수,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한 정책자료의 준비가 있어야 중앙정부와의 논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셋째,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 언론단체들이 힘을 합쳐 위와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필요성을 실감하도록 상호교감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 출신 뿐만아니라 도를 거쳐간 유력인사들을 설득하여 필요한 입법 및 법률개정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채기(200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확충 방안, 한국재정학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권형신 · 이상용 · 이재성(2006),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해남.

김대영 · 조계근(2008), 지방소비세 도입과 강원도 대응방안, 강원발전연구원.

배득종(2007), "지방재정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방안", 지방재정 No.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희준, 강인재, 장노순, 최근열(2008),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유 훈(2000), 지방재정론, 서울: 법문사.

윤석완(2007), "신정부의 지방재정 전략과 과제", 지방재정 No.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영 · 전영준 · 현진권(2005), “한국재정분권 수준의 평가”,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재정 · 공공경제학회.

이 효(2009),「지방재정분석제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장노순(2002), “강원 지방재정의 특성과 과제”, 강원경제의 이해: 진단과 발전전략, 강원사회연구회, 서울: 한울아카데미.

장노순(2007), “참여정부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46집 제2호, 춘천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장노순(2009), “강원도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세계속의 강원경제』, 강원발전연구원.

조계근(2008), 고령화가 지방세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조계근(2009), 탄소세의 합리적 도입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조기현, 신두섭(2008),「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지방재정위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2007), “분권교부세 재원확충의 정책유효성 검증”,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1호(통권68호), 29-55.

최병호(20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안”, 지방재정 No.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최성록, 박은진(2009), “DMZ일원 주요자원의 보전가치 추정”, 강원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공동

최원익(2004), “지방재정구조 및 운영행태에 대한 소고”, 한국지방재정논집 Vol.8,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재정과 지방세』, 각년도

행정안전(자치)부, 지방세정연감(1992-2009).

행정안전(자치)부, 지방재정연감(1986-200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행정안전부(2009),「지방채무 통계 분석보고」.